

광주지방법원 2021. 12. 7 선고 2021가단259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1. 11. 16.

판 결 선 고 2021. 12. 7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5/161 지분에 관하여 2020. 6. 3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5/16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0. 6. 4. 접수 제174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(1) 원고는 D을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(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2020가소5185), 2020. 9. 24. 'D은 원고에게 14,201,024원 중 그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2020. 5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(2) D은 2020. 6. 3. 자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중 65/161 지분을 매도하고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, 이 사건 토지 중 65/16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0. 6. 4. 접수 제174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(이하 '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.

(3)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65/161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나주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

1) 원고의 D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2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은 D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나. D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

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D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,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2)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E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, 위 토지 소유자가 피고의 통행을 막겠다고 하여 그에 대응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

D에게 10,000,000원을 송금하였을 뿐 D의 채무관계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,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.

을 제1, 2호증, 을 제3호증의 1,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, 피고가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인 2020. 6. 4. D의 계좌로 10,000,000원을 송금한 사실, 피고가 2020. 6. 22.경 나주시에 위 나주시 E 토지 소유자와의 통행로 분쟁에 관한 문의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

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D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옥희

목 록

전남 나주시 F 대 161㎡. 끝.

